

제 629 호  
1977.11.22

발행인:서울특별시청 구 자 관  
편 집: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세: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화 75-5444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198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3
◎ 훈 령	
제 477 호 : 서울특별시시세과징기판과공무원의 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6
제 478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규정	8
◎ 고 시	
제 407 호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지적승인	9
◎ 공 고	
제 289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10
제 291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0
제 295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1
◎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226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7년 11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 1198 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가격평가위원회의 운영 ) ① 영제 1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회의 개최통보로서 위촉에 가음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도시정비국장 및 도시정비담당관으로 하고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대청과 위원회 수당에 관하여는 영제 67조 및 제 68조의 지방도시재개발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와 회의독작성에 관하여는 영제 60조 및 제 65조의 중앙도시재개발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 가격평가절차 ) ① 법제 9조 제 10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자가 명시된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의의명세서 3부  
 2. 현황측량도(지적명시) 3부  
 3. 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 기부의 등본 각 1부  
 ② 위원회의 간사는 2개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수수료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도시재개발심의회의 운영)

(1) 영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재개발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위원은 회의 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가통하고 회의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제 2 부시장, 도시정비국장 및 도시정비담당관으로 하고 회장은 제 2 부시장이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성,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제 2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공동구의 관리비용징수) ①

영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비(조명, 배수, 통풍, 방수, 개축, 재해복구 기타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를 년도별로 산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시장이 매년 1회 조정 부과한다.

② 공동구 관리비의 납기는 매년 3월 말일로 하고 납기 1개월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부기일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제 6 조 (수익자부담금징수) ①

영제 5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산출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거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재개발전의 가격은 재개발사업인가 고시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재개발후의 가격은 분양처분고시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분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재

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또는 지구의 경계로부터 100 미터이내의 토지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조세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및건축물
3. 부과대상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토지 및 건축물
4. 1개지역에 대하여 재개발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징수된 대상에 대하여 그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중복 부과되는 경우
5.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③ 부담금은 분양처분고시일 현재 의 소유권자단위로 그 고시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분기의 과세표준액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기는

부과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관료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 및 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 조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제 63 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수입금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제 63 조 및 영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수입
  2. 법제 58 조 및 제 59 조, 영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 및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부담금 수입
  3. 법제 60 조 및 영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국고융자금수입과 영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대출이자 수입
  4. 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수타사업수입
  5.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
-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제 60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제 57 조 제 2 항 및 영제 48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 3. 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사업 및  
관련수탁사업
-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
- 5.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사계획및  
행정지원비

③ 기금운용계획의 승인, 수정, 결산등 기금의 관리운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기금의 외제직공무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세입징수관, 지출판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구분제리) 기금의 수입 지출에 있어서는 재개발구역 또는 지구와 그 성격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제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기금에 관한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조례폐지및경과조치) ①이조례시행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자적평가위원회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훈 령
-----

서울특별시세과징기판과 공무원의 실적관리규정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서울특별시훈령제 477 호

서울특별시세과징기판과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제 목 중 「시세과징기관」을 「세입금과징기관」으로 한다.

제 1 조 본문 중 「시세과징기관」을 「세입금과징기관」으로 한다.

제 2 조 제 1 항 중 제 3 호 내지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납액대 정리실적
- 4. 추징액대 징수실적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기관별, 회계별로 당해기관의 세입징수관이 매월 15 일까지 전월분 및 전월까지의 실적누계를 종합하여 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 1 항 본문 중 「시세」를 「세입금」으로 제 2 호 「시세과징월보」를 「세입금납기내 및 납기후과징월보」로 하고 제 3 호 및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납액징수실적보고서
- 4. 추징액징수실적보고서

제 3 조 제 2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삭제한다.

② 과징원의 근무실적은 기관별 소속 과장이 평가하고 소속과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 4 조 제 1 항 중 제 1 호 내지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입목표대징수실적 40%
- 2. 부과액대징수실적 40%
- 3. 세납액대징수실적 10%
- 4. 추징액대징수실적 10%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상벌등) (1) 세입금징수 유공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 2 회 이상 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세 및 세외수입금 과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특별승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무국장은 세입금 과징실적이 극히 불량한 기관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또는 인사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입업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차출 근무케하거나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할 수 없다. 다만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서울특별시훈령 제 478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규정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설치) 지하철건설에 따른 종합적용계획 업무지원 및 조정을 위하여 제 2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 1. 지하철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 2. 서울특별시종합도시계획과의 관계
- 3. 자금에 관한 사항
- 4. 자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부여하는 재지원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관광운수국장, 건설국장, 하수국장, 수도국장, 지하철본부장 및 주택건설사업소장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조 ( 간 사 와 서 기 ) ( 1 ) 위원회에 간사 1 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철본부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07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 77.3.16 )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년 11 월 19 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원결정 고시

구분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구로제 5 아동공원	영등포구구로동 139-62	10,847	

표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9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7.11.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 제 282 호
- 2. 허가일자 : 1967.7.27
- 3. 제조업체명 : 동아건설 (주)
- 4. 대표자 : 이 창 익
- 5.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 가 27 번지
- 6. 규격번호 : KS B 1002
- 7. 품 명 : 6 각보울트 (미터나사)
- 8. 처분기간 : 1977.11.10 ~ 1978.2.10 (3개월간)

- 9. 표시정지사유 : KS 규격미달
- 10. 기준미달항목 : 경도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1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영등계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변경요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본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11.

서울특별시장

( 환지계획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 제1지구 토지구  
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 54,567.8 명

다. 변경위치 : 강남구 반포동 274의  
48호의 183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5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 호 ( 77.5.19 ) 로 고시된 신문로 - 문화회관간 및 정부종합청사뒤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속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단의 공람에 임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11.24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 1. 사업장의위치 : 신문로 - 시민회관 및 정부종합청사 뒤
- 2. 사업종류및명칭 : 신문로 - 시민회관 및 정부종합청사뒤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신문로 - 시민회관간 도로 개설공사

B = 15 미터 L = 150 미터

아스팔트포장 : 14.7a

흘판부설 : 239 미터

유색보도부력포설 : 6a

나. 정부종합청사뒤 도로 개설공사

B = 15 L = 180 아스팔트포장 20a

흘판 351 미터 . 유색보도부력포설 7a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 77.11.20

- 77.12.30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수 용 토 지 조 서

신문로~시민회관간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방m)	주소	성명
종로구	신문로1가	23-2	대지	38.1				신문로1가22	오형근
"	"	18	"	15.2				" 18	이세진
"	"	19	"	24.5				당주동 28	이용락
"	당주동	35	"	40.7				"	구본정
"	"	36	"	21.0				" 36	이상용
"	"	34	"	2.4				" 34	김희경
"	"	37-7	"	38.2				" 37-4	김인숙
"	"	37-2	"	2.6				" 37-2	정선영
"	"	37-5	"	42.9				" 37-5	최경애
"	"	39-5	"	10.3				소공동 116-1	김영애
"	"	39-3	"	15.9				"	서울은행(주)
"	"	39-1	"	26.7				당주동 63	이상훈
"	"	40-2	"	7.6				중구신당동 293-14	이창식
"	"	42-1	"	96.4				당주동 42	하수욱
"	"	43-2	"	1.3				" 43	임용연
"	"	45-12	"	25.1				" 45-2	이순희외 3인
"	"	44-2	"	29.7				" 44-2	현봉희
"	"	43-1	"	0.2				" 43	임용연

수 용 전 물 조 서

신문로~시민회관간

토지소재		이 동 전			이 동 후			소 유 자	
구	동	지번	각조	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방m)	주 소	성 명
중로구	신문로1가	18	철근콘크리트	48.0				과 동	이세진
"	"	19	"	72.0				"	이용익
"	당주동	34	"	4.0				"	김희도
"	"	35	무조와습	23.0				당주동 36-2	구본정
"	"	36	"	44.0				"	김상억
"	"	37-2	"	2.0				과 동	서인창외1인
"	"	37-3	연와조	70.0				"	박덕순
"	"	39-2, 3	무조와습	10.0				당주동 39-2	하형
"	"	42	철근콘크리트	80.0				과 동	전옥순
"	"	40	"	15.0				"	이창식
"	"	43	무조와습	4.0				"	박만갑
"	"	44-1	"	44-1				"	현봉희
"	신문로1가	23	철근콘크리트	23				"	오형근
"	당주동	37-4	무조와습	37-4				"	김인숙
"	"	45-2	"	45-2				"	박만갑

수 용 토 지							경부종합청사취	
토지소계	이 동 건			이 동 후			소 유 자	
구 동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중로구	정선동	59-6	대지	2.4			정진동 276	김형완
"	"	59-7	"	2.6			"	"
"	"	59-1	"	32.2			"	"
"	"	60-2	"	23.8			"	"
"	"	58-4	"	3.2			"	"
"	"	59-4	"	5.0			라 동	이길홍
"	"	59-2	"	3.2			"	양원희
"	"	59-8	"	1.0			"	이길홍
"	"	59-9	"	7.3			"	양원희
"	"	60-3	"	13.4			"	이문걸
"	"	60-4	"	13.5			"	김윤기
"	"	182-1	"	9.2			소공동 112-26	한영삼 (주)
"	"	183-1	"	26.0			"	조송내
"	"	184-6	"	1.6			"	"
"	"	184-9	"	1.3			"	"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	주소	성명
종로구	괴선동	184-5	대지	2.4				소공동 112-26	조용태
"	"	184-4	"	11.0				역촌동 58-37	조영현
"	"	183-2	"	21.4				과 동	박은봉
"	"	183-5	"	5.6				"	"
"	"	180	"	13.9				"	김영환
"	"	180-1	"	7.1				"	"
"	"	185-1	"	44.1				"	최종환
"	"	178-1	"	26.1				"	문기남
"	"	177-1	"	62.8				"	문종태
"	"	191	"	7.6				"	이관취
"	"	191-1	"	9.4				"	"
"	"	195-3	"	56.0				"	김경걸
"	"	195-2	"	8.1				"	정인수
"	"	198	"	15.0				"	이거철
"	"	199	"	15.0				"	강철문
"	"	197	"	20.2				"	이소애
"	"	200-1	"	16.8				"	김성자

수용건물조서

<정부종합청사뒤>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소유자	
구	동	지번	구조	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방m)	주소	성명
종로구	계선동	200-1	철근콘크리트	67.0				과동	김삼자
		201-1							
		199	연와조	7.0					임명숙
		198		8.0					
		197	목와조	16.0				신문로 2가 105	김종상
		195-2	연와조	24.0				과동	정인수
		195-1	목와조	34.0					김정진
		193-194	철근콘크리트	125.54					정인영
		192	목와조	15.0					김창완
		177		51.0					
		187		23.46					최종환
		185		66.0					
		184		16.0					
		182		17.0					한우산업
		180		12.0					원순천
		181	철근콘크리트	56.13					최정옥
		60-2	목와조	13.0					김윤기
		60-1		14.0					이문열
		59-2		7.0					양인희

사 령

○ 1977.11.15

제1근로자회관 지방행정  
주 사 조 준 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7.11.17

상 정 과 지방행정  
주 사 고 각 무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3 항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77.11.22

기회담당관실 지방행정  
주 사 보 김 국 영

원래 의하여 그 직을 전함.

○ 1977.11.25

성 동 구 지방행정  
주 사 무 관 유 영

지방서기관에 주서함.